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정동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.

발 의 자 : 정동영 · 김원이 · 이기현
박해철 · 주철현 · 황정아
최민희 · 김상욱 · 김문수
김병기 · 김 윤 · 박지원
이훈기 · 송재봉 · 모경중
이상식 · 박희승 · 문금주
문진석 · 장종태 · 박홍근
김영배 · 양부남 · 권향엽
이용선 · 이광희 · 이재관
박용갑 · 정진욱 · 황명선
김남근 · 문대림 · 이재강
허 영 · 조인철 · 이병진
복기왕 · 오세희 · 윤건영
정일영 · 김현정 · 최혁진
의원(42인)

제안이유

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반복되면서,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. 특히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외교·안보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

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.

헌법재판소는 ‘대북전단 등 살포행위’에 대해 ‘일률적인 금지·처벌 보다는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및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’고 판시한 바 있음(2020헌마1724·1733병합)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시법은 이러한 살포행위를 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 사전 신고제도나 금지통고 등 절차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음.

이에 ‘대북전단 등 살포행위’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며,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‘침익성이 적은 방식’의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1.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하려는 경우, 살포 시간·장소·방법·대상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살포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. 두 곳 이상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시·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, 그 밖의 사항은 현행 집회신고 규정을 준용함(안 제6조의2 신설).
2.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살포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

에 위험을 초래하거나, 군사작전·통제구역에서 이뤄지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,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접경지역에서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48시간 경과 후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의2 신설).

3. 위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통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, 기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지·해산 근거 및 벌칙·과태료 규정을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(안 부칙 제2조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21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의 신고 등) 대북전단 등 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살포행위를 하려는 자는 살포 시간, 장소, 방법, 대상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살포행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그 밖에 신고서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6조를 준용한다. 다만, 대북전단 등 살포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·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두 곳 이상의 시·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·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(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) 제6조의2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할 것을 신고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. 다만,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접경지역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살

포행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.

1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「항공안전법」 제161조 위반 및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2. 살포 장소가 군사작전 또는 통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
3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에 따른 대북전단 살포행위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조의 “옥외집회 또는 시위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(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)

제8조(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)

제9조(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)

제20조(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)

제22조(벌칙)

제25조(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)

제26조(과태료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대북전단 등 살포행위</u> <u>의 신고 등) 대북전단 등 「남</u> <u>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</u> <u>따른 살포행위를 하려는 자는</u> <u>살포 시간, 장소, 방법, 대상물</u> <u>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재한</u> <u>신고서를 살포행위를 시작하기</u> <u>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</u> <u>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</u> <u>한다. 그 밖에 신고서와 관련된</u> <u>사항은 법 제6조를 준용한다.</u> <u>다만, 대북전단 등 살포 장소가</u> <u>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</u> <u>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·도</u> <u>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</u> <u>두 곳 이상의 시·도경찰청 관</u> <u>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</u> <u>를 관할하는 시·도경찰청장에</u> <u>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2(대북전단 등 살포행위</u> <u>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) 제6</u> <u>조의2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</u> <u>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된</u>

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할 것을 신고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. 다만,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접경지역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살포행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.

1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「항공안전법」 제161조 위반 및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2. 살포 장소가 군사작전 또는 통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
3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